

NAJU
*Web
Contents*

2021년 09월 25일 07시 07분

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「주택 임대차 신고제」 시행 안내	3
인기 게시물	3

「주택 임대차 신고제」 시행 안내

2021.05.21 조회수 634 등록자 임지윤

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「주택 임대차 신고제」를 안내하오니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신고주택 :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주택
- ◆ 신고대상 :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(월세)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
- ◆ 신고기한 :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- ◆ 신고의무자 :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, 임차인 공동신고 (위임신고 가능)
- ◆ 신고서류 :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, 주택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부여시 필요)
- ◆ 신고방법 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

<https://rtms.molit.go.kr/>
국토교통부 /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(나주시)_수정.jpg(91 hit/ 2.07 MB)

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

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대상 확대 안내

다음글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안내

인기 게시물

(<http://www.naju.go.kr>)

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(각종서식 포함)
2021년「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」참여자 모집 공고
도시관리계획 변경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주

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및 안내
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확대 운영 안내

COPYRIGHT © NAJU-SI. ALL RIGHTS RESERVED.

NAJU

Web Contents

